

#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  
1993. 12. 1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 회 정기회

. 제 6 차 내무위원회 (1993. 12. 1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행정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통합
-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 변경  
( 2년 거치 1년 상환 → 3년 거치 2년 상환 )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윤태무)

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'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있어 성격이 유사  
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은 통폐합하는 등  
'94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 
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  
회계로 통합운영 하므로써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 
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

. 일반회계로 통.폐합함에 있어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 
각조문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제9조 제4항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 
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을 2년거티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개정  
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

신구조문 대비표